

조세심판례 검토를 통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완점 분석*

기은선** · 심준용*** · 김기영**** · 윤재원*****

<요 약>

본 연구는 조세심판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조세심판례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심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판례를 추출하고 상증세법 상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에 처리된 상증세법 조세심판 청구 827건 중 280건에 대해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졌다(재조사, 경정, 취소 처분). 이는 과세관청의 과도한 세금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상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7년 상증세법 조세심판례 497건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주요 미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심판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신고된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둘째, 현행 법령에서는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시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기간 경과가 상당한 경우 재산가치가 급변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한정적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조세심판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쟁점사항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상증세법 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 정책과 관련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선행연구는 조세불복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징수의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으며, 2018년도 한국세무학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조교수, eski@kangwon.ac.kr, 주저자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junyong00@naver.com,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kykim@mju.ac.kr, 공동저자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wyoonyoon@hongik.ac.kr, 공동저자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자체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예방대책을 제시한다는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심판, 조세불복, 납세자

I. 서 론

본 연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과 관련한 조세심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증세법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제공하는 상증세법 조세심판례 중 2017년 심판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판청구 현황을 분석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심판례를 추출함으로써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심판청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부당한 세금 부과·징수에 대응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심판청구는 과세관청과 독립된 기구인 조세심판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심판결정을 내리는 심판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준사법적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과세관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비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할 수 있다(최영관·홍정화 2015; 박상봉 2016). 이로 인해 그 외 불복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심판청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불복제도 현황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조세불복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세불복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조세불복을 선택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징수가 부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그 근거가 되는 세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심판청구제도를 바라보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상증세법 조세심판례 497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약 3건 당 1건 이상의 심판례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불복 심판례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로는 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35%가 넘는 인용률을 보이고 있어, 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충돌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체 심판례 현황을 분석하는 데 이어 각 심판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납세자의 반복적인 청구가 이루어지는 사항, 또는 기존 심판례와 어긋나는 결정이 내려진 심판례를 추출하고 이와 관련한 상증세법 상 미비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상증세법 상 미비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 정책과 관련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선행연구는 조세불복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조세불복제도 자체의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징수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자체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후구제제도인 불복절차 전 단계에서 필요한 예방대책을 제시한다는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불복 제도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 III 장에서는 조세불복 제도 중 본 연구의 검토 대상이 되는 조세심판제도 관련 제반사항 및 심판례 현황을 분석한다. 제 IV 장에서는 심판례의 세부 분석을 통해 상증세법 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1. 연구배경—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

납세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① 과세권의 남용, ②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의 오류, ③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당한 부과·징수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안숙찬 2017). 이 때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부당한 부과·징수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조세불복제도는 크게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와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로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이러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¹⁾ 이하에서 각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1) 납세자는 조세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가. 과세전적부심사²⁾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나 감사의 결과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 통지를 한 과세관청(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해당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이수진·김보례 2014).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의 고지처분 이전에 과세관청의 부실과세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점검의 성격을 갖는 임의적 절차에 해당한다.

나. 이의신청³⁾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에 대해 불복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임의적 절차다.

다. 국세청 심사청구⁴⁾

국세청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관련 조세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기해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라. 감사원 심사청구⁵⁾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는 조세와 관련한 불복 뿐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제도(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행정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의 조세처분 행위에 대해 불복이 있는 납세자가 감사원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불복제도이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조세처분이 있음을 알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6조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1조

5)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조세처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마. 심판청구⁶⁾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는 불복제도인 심판청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부당한 세금 부과·징수에 대응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⁷⁾ 심판청구는 과세관청과 독립된 기구인 조세심판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심판결정을 내리는 심판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준사법적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과세관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비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할 수 있다(최영관·홍정화 2015 ; 박상봉 2016).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에는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며, 조세심판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조세심판관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조세심판원은 1명의 원장, 6개 심판부⁸⁾를 담당하는 6명의 상임조세심판관, 30명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있으며, 심판부 산하 13조사관실과 행정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직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관련 조세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하는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판청구를 받은 조세심판원장은 해당 조세처분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 조세심판관 1인과 배석 조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도록 한다.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장이 되어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조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진행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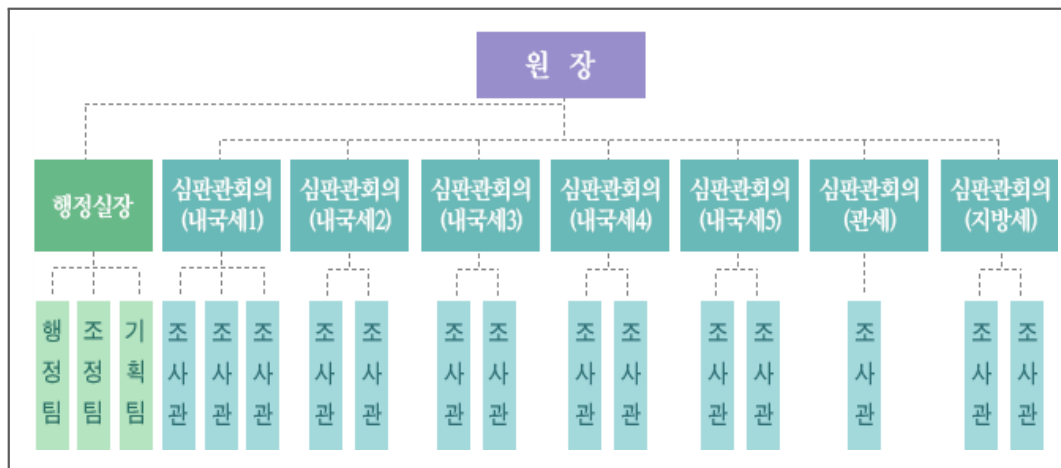
6)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7) 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세심판소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1월 조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국세 및 관세의 심판청구 외에 지방세 심사청구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8) 내국세 담당 4개 심판부, 소액 내국세와 관세를 담당하는 1개 심판부 및 지방세 담당 1개 심판부의 총 6개 심판부

조세심판관회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처분 이외의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인 납세자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처분보다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림 1〉 조세심판원 조직도



<출처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http://www.tt.go.kr/mUser/intro/organizationList.do>)>

바.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해당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과세관청 소재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⁹⁾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로 하여금 30일~90일의 기간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각 불복제도에 대하여 과세관청, 감사원, 또는 조세심판원이 결정하는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부터 행정소송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세불복은 한 개의 연도를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안숙찬 2017). 다음의 <표 1>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조세불복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 1>에 의하면 전체 조세불복제도 중 납세자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심판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6,000건에서 8,000건 이상의 접수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 조세처분 통지 건수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인 이의신청과 국세청 심사청구는 연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심판청구가 주요 조세불복제도

9)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역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표 1>의 결과는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 불복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보다는 과세관청과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불복제도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양한 조세불복제도 중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주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표 1> 우리나라의 연도별 조세불복 현황

연도	납세인원*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 건수	조세불복 접수 건수**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2012년	13,792,461	189,342	4,892	5,193	818	500	6,424	1,679
2013년	14,223,703	243,498	5,182	4,649	746	522	7,883	1,881
2014년	14,657,969	346,537	3,749	4,803	724	710	8,474	1,957
2015년	15,565,272	177,662	2,691	3,713	551	1,358	8,273	2,026
2016년	16,367,681	266,072	2,737	3,535	549	964	6,003	1,484

* 납세인원은 국세통계연보의 직접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원천세)와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의 납세인원을 합한 수치임.

** 해당 연도 중 접수된 건수이며, 전년도에 처리가 되지 않고 이월된 건에 대해 당년도에 처리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처리가 된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즉, 전년도 이월건수+당년도 접수건수-당년도 처리건수=차년도 이월건수

*** 연도별 감사연보에서 추출함.

**** 연도별 조세심판통계연보에서 추출함.

2. 선행연구

조세불복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를 분석하고 조세불복제도의 절차 또는 입법 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둘째, 세무대리인 등의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가 있으며, 셋째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한 연구 등이 있다.

가.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 분석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현행 불복절차가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안숙찬(2003)은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가 너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효과적인 조세불복제도로 개선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폐지하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통합하여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했다. 유사하게 한상국·박훈(2005)은 과세전적부심사의 활성화를 강조했으며, 이의신청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폐지해야 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조세심판원에서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까지 통합해서 관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조 외(2005), 조재천(2007), 길용원(2014) 역시 우리나라의 복잡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폐지하고,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전오(2007)는 현행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변경하지 않고 대신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외에 과세조정제도를 추가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2단계로 과세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능을 흡수하여 운영하며, 마지막 3단계로 과세조정제도에서 행정소송을 제외한 모든 불복제도를 흡수하여 운영하는 안이다. 결과적으로 불복제도는 과세조정제도와 행정소송제도의 두 가지로 단순화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홍기용(2011)은 조세불복과 관련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가칭 납세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동시에 행정기관의 일원화를 위하여 가칭 납세자보호원 신설을 주장하였다. 정지선·최천규(2012)는 우리나라 조세심판원과 일본의 국세불복심판소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개편하고, 지방세 심판업무는 종전대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환원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인력 확보를 강조하고, 조세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실무상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을 법적 제도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박중수(2012)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의 인용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심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해 그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조세불복제도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형준·이광수(2014), 이영환(2016)은 주요국가의 조세불복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해 청구금액에 따라 2단계 심급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하며, 조세불복단계를 단순화 하는 방안으로 이의신청과 국세청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심판청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수진·김보례(2014)는 조세심판제도가 국세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법률 상 불복에 대한 결정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대한 납세자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미비되어 있는 점,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재조사 결정으로 인해 결정기간이 연장되는 점,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짧아 심도 있는 심리가 어려운 점 등을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행정적으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입장과 가깝게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는 점, 조세불복 사안과 관련한 심리 및 결정내용의 비공개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상봉(2016)은 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조세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조세심판원장의 재심리 권고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나. 세무대리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

이광수·정규언(2007)은 조세불복절차의 선택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조세불복제도의 편의성이 중요하거나, 세액 규모가 1,000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에는 국세청 심사청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불복에 대한 결정의 공정성이 중요하거나, 세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조세불복절차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자들은 납세자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이의신청제도는 유지하되, 이용률과 인용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조재천 외(2008)는 교수, 국세공무원, 기업의 세무담당자, 변호사,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현행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복잡한 심급 구조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이용 만족도는 낮았으며, 이의신청과 감사원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통합하는 등의 조세불복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을 발견했다. 또한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며, 국세·지방세·관세를 모두 관장하도록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안이 지지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과거 문헌연구에서 나타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한편, 조세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도 현행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인식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는 조세전문가 집단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최영관·홍정화(2015)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와 관련한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 납세자 집단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납세자는 다원화되고 복잡한 조세불복제도로 인해 충분한 권익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납세자 모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이 촉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집단 모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외함으로써 심급구조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의신청제도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와 중복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납세자보호를 위한 업무담당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는 업무담당자의 폭넓은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 영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 집단 모두 외부위원을 추천받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실증 연구

김흥기·홍정화(2011)는 2008년과 2009년에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2,326건의 조세심판례를 대상으로 청구금액, 쟁점의 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경유 여부,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횟수가 인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심판청구금액이 클수록, 관련 쟁점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사실판단 사건인 경우에 인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인용률이 높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경유 여부는 인용률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한편, 조세심판관회의 횟수가 많을수록, 청구인이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길수록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저자들은 심판청구 기회를 확대하고,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심판청구의 처리방법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리하고, 유형별로 전문 심판부에 배정함으로써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배형남 외(2014)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1,206건의 조세심판례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금액과 쟁점사항,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이 심판결정의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심판청구금액이 클수록, 쟁점사항이 물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처리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에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직 직속 기관으로 개편된 이후에 심판결정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을 발견했다. 배형남·김갑순(2015)은 배형남 외(2014)에서 사용된 1,206건의 조세심판례를 이용하여 심판청구사건의 특성과 조세심판제도의 특성, 정부세입과 경제상황이 조세심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동일한 심판청구사건의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인용률이 높은 반면 심판청구금액이 클수록, 쟁점사항이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물납인 경우 인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2008년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 이후 인용률이 낮아졌음을 보고했다. 반면, 직전연도 세수 진도가 높을수록 인용률이 높았으나, 상승하는 경기 하에서는 인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숙찬(2017)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이 공개하고 있는 조세불복 통계를 전반적으로 활용하여 조세불복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표 1>과 일치하는 결과다. 조세불복과 관련한 결정에서 인용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불복절차에서 세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대체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의 인용률이 높았다.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인용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주로 조세불복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조세심판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인용률에 초점을 맞추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전반적인 조세심판례 분석을 통해 조세불복제도 자체가 아닌 조세불복대상 청구사건의 근거가 되는 세법 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상속세법 심판청구 처리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심판청구가 제기되는 항목과 인용률이 높은 항목을 식별한다. 세부 심판례 분석에서는 심판청구 처리 현황을 통해 식별한 쟁점 항목별로 관련 법령을 정리하고, 해당하는 심판례 결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속세법 상 미비점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파악한 미비점 및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I. 조세심판 현황 분석

1. 조세심판 처리 현황

다음의 <표 2>는 조세심판통계연보에서 추출한 2017년(Panel A)과 2016년(Panel B)의 조세심판 처리 현황을 제시한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7년(2016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전체 건수는 전년도인 2016년(2015년)에서 이월된 1,598건(2,223건)과 2017년(2016년) 접수된 6,753건(6,003)을 합하여 총 8,351건(8,226건)이었다. 이 중 1,600건(1,598건)은 2017년(2016년) 중 처리가 되지 않아 2018년(2017년)으로 이월되었으며, 6,751건(6,628건)이 처리되었다. 이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가 127건(163건)으로 실제 심판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6,624건(6,465건)이다. 전반적으로 인용률은 재조사를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 27.79%(25.32%)로 나타났으며, 세목별로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관세에서 30%를 초과하는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각각 37.09%(39.32%)와 34.25%(33.12%)의 인용률을 보임으로써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3건 당

1건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표 2>의 결과는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표 2〉 2017년 및 2016년 세목별 조세심판 처리 현황

Panel A : 2017년 세목별 조세심판 처리 현황						
세목	각하	기각	재조사	인용 (경정, 취소)	인용률* (재조사 포함)	인용률** (재조사 제외)
법인세	27	284	48	197	44.06%	38.78%
소득세	75	650	113	133	25.33%	15.50%
부가가치세	586	758	179	188	21.45%	12.27%
양도소득세	42	550	34	158	24.49%	21.07%
상속세	20	75	13	43	37.09%	31.16%
증여세	15	415	48	176	34.25%	29.04%
기타내국세	53	98	11	31	21.76%	17.03%
관세	21	171	41	127	46.67%	39.81%
지방세	96	847	14	287	24.20%	23.33%
합계	935	3,848	501	1,340	27.79%	21.88%
Panel B : 2016년 세목별 조세심판 처리 현황						
세목	각하	기각	재조사	인용 (경정, 취소)	인용률* (재조사 포함)	인용률** (재조사 제외)
법인세	22	272	33	155	39.00%	34.52%
소득세	56	384	49	124	28.22%	21.99%
부가가치세	65	1,259	54	204	16.31%	13.35%
양도소득세	31	607	62	132	23.32%	17.14%
상속세	15	56	3	43	39.32%	37.72%
증여세	25	397	18	191	33.12%	31.16%
기타내국세	205	109	23	23	12.78%	6.82%
관세	12	231	40	84	33.79%	25.69%
지방세	75	1,007	17	382	26.94%	26.09%
합계	506	4,322	299	1,338	25.32%	21.70%

* (재조사 건수+인용 건수) / (각하 건수+기각 건수+재조사 건수+인용 건수)

** 인용 건수 / (각하 건수+기각 건수+인용 건수) : 재조사는 과세관청의 재조사에 따라서 이후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용률 계산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출처 : 2016년, 2017년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 수정>

2. 상증세법 조세심판례 현황

다음 <표 3>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조세심판원의 2017년 상증세법 심판례와 관련한 현황을 보여준다. <표 3> Panel A는 세목별 2017년 조세심판례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판례는 497건이며, 상속세 125건, 증여세 37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제시된 판례 기준 인용률은 상속세 37.60%, 증여세 32.53%로 3건 당 1건 이상의 판례에서 인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Panel B는 497건의 판례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전체 497건의 판례 중 14%를 차지하는 70건의 판례가 주식, 부동산 등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이었다. 특히 70건 중 66건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판례였다. 그 외로 재산의 시가평가 67건, 상속재산가액 62건, 증여재산가액 11건으로 나타나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행위(저가양수, 고가양도, 부담부증여 등) 30건의 판례에 대해서는 인용률이 46.67%로 거의 2건당 1건에 대해 인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표 3> Panel B의 분석 결과는 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 또는 법의 잘못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상증세법 상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Panel C는 각 판례와 관련되어 있는 법조항 별로 판례 건수를 구분한 내역을 제시한다. 하나의 판례에 2개 이상의 법조항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 인해 전체 건수 638건은 판례 총 건수 497건보다 많다. <표 3> Panel B에서 분석된 것처럼 명의신탁과 관련한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대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44건의 판례와 관련된 상증세법 제2조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34건의 판례와 관련된 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14건의 판례와 관련된 상증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로 이루어 볼 때 재산에 대한 평가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충돌을 일으키는 항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세심판처리 현황과 조세심판례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497건의 상증세법 조세심판례를 건별로 검토한 결과로 상증세법의 미비점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제시한다.

10) <표 2>의 2017년 상증세법 심판 처리건수는 805건으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판례는 전체 처리건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출처 : <http://www.tt.go.kr/mUser/dem/searchDemList.do>

〈표 3〉 2017년 상속세법 조세심판례 현황

Panel A : 세목별 조세심판례								
세목	각하	기각	재조사	경정	취소	합계	인용률* (재조사 포함)	인용률** (재조사 제외)
상속세	13	65	8	32	7	125	37.60%	33.33%
증여세	15	236	21	41	59	372	32.53%	28.49%
합계	28	301	29	73	66	497	33.80%	29.70%
Panel B : 세부내용별 조세심판례								
세부내용	각하	기각	재조사	경정	취소	합계	인용률* (재조사 포함)	인용률** (재조사 제외)
명의신탁 (주식, 부동산 등)	0	50	2	3	15	70	28.57%	26.47%
재산의 시가 평가	1	44	5	11	6	67	32.84%	27.42%
무상증여	0	41	6	4	13	64	35.94%	29.31%
상속재산가액	0	34	7	17	4	62	45.16%	38.18%
연부연납(가산금)	4	36	0	19	0	59	32.20%	32.20%
부당행위***	0	16	3	2	9	30	46.67%	40.74%
주식의 초과이익	0	19	0	0	6	25	24.00%	24.00%
무상대여	0	11	3	2	5	21	47.62%	38.89%
사전증여	0	9	0	4	1	14	35.71%	35.71%
납세의무(가산세, 연대납세의무)	0	9	1	2	0	12	25.00%	18.18%
증여재산가액	0	5	1	4	1	11	54.55%	50.00%
경정청구	6	3	0	1	2	12	25.00%	25.00%
채무면제	0	6	0	0	0	6	0.00%	0.00%
기타	17	18	1	4	4	44	20.45%	18.60%
합계	28	301	29	73	66	497	33.80%	29.70%
Panel C : 관련 법조항별 조세심판례								
관련법	조	내 용		건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6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		4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3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3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8				

〈표 3〉 2017년 상속세법 조세심판례 현황 (계속)

관련법	조	내 용	건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2015-12-15 개정에서 삭제되었음)	2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14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11
기타*****			213
합계			638

* (재조사 건수+인용 건수) / (각하 건수+기각 건수+재조사 건수+인용 건수)

** 인용 건수 / (각하 건수+기각 건수+인용 건수) : 재조사는 과세관청에 재조사에 따라서 이후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용률 계산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저가양수, 고가양도, 부담부증여 등

**** 하나의 심판청구사건에 관련조항이 2개 이상인 경우로 인해 총 합계 건수는 판례건수 합계 497건보다 많음.

***** 관련 판례가 10건 미만인 조항을 기타로 분류하였음.

<출처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http://www.tt.go.kr/mUser/dem/searchDemList.do>) 자료 가공>

IV. 상속세법 조세심판례 분석 결과

1.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접수 이후 신고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¹¹⁾ 그러나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 평가기준

11)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¹²⁾

나. 관련 조세심판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다수의 조세심판례가 존재한다. 조심2017서2710(2017.11.29.)에서 청구인은 비교아파트 매매거래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직접 체결됐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증여세 신고 당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지만, 기각되었다.¹³⁾ 다만,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당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면제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조심2017서1008(2017.9.21.)에서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이 관할구청에 신고되기 전이라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조세심판원은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속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매매사례가액 정보 이용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¹⁴⁾ 조심2016서3515(2017.1.16.)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단지가 집값 담합단지로 적발되어 8주간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됨에 따라 실거래가 열람이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해 집값 담합단지 35곳에 대한 실거래가가 공개된 사실이 있고, 비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도 실거래가가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 또한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¹⁵⁾

다. 쟁점 및 개선방안

상기의 조세심판례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접수

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13)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9118&menuNm=demList&rdView=subject

14)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7459&menuNm=demList&rdView=subject

15)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1838&menuNm=demList&rdView=subject

이후에 지자체에 신고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접수 이후에 지자체에 신고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비교아파트 양도자가 지자체에 매매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집값 담합단지로 적발되어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당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납세자 불만과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시가 평가기간 확장요건 명확화

가. 관련 규정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¹⁶⁾ 시가인정기간을 기존 6개월(증여는 3개월)에서 2년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¹⁷⁾ 반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시가인정기간의 확장을 위해 언제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나. 관련 조세심판례

현재 조세심판례의 기본적 입장은 납세자가 조세불복 과정에서 제시한 매매 등 가액이 평가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조심2016서3539, 2017.01.18. ; 조심2017중3637, 2017.10.24. ; 조심2017서1393, 2017.07.12.).¹⁸⁾

16)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7)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

18)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1963&menuNm=demList&rdView=subject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8275&menuNm=demList&rdView=subject

다. 쟁점 및 개선방안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평가기간 확장이 가능한 반면 납세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이후에 평가기간을 도과한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에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 평가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시가 평가기간 확장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세액이 달라진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조세불복 과정에서 제시한, 평가기간을 도과한 매매 등 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납세자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3.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관련 재산가액 평가기준일 확장

가. 관련 규정

상증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때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는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조세심판례

조심2017중3957(2017. 12. 28.)에서 청구인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영업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산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에 잔금 청산을 받았다. 해당 주식의 가치는 2014년 말 급락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과세관청에서는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¹⁹⁾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6594&menuNm=demList&rdView=subject

19)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60266&menuNm=demList&rdView=subject

다. 쟁점 및 개선방안

매매계약일 당시 평가한 재산가액이 대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급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기간 경과가 상당한 경우 그 사이의 기간에 재산 가치가 급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환율 변동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매매계약일 당시 주식 가치에 대한 합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된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일 이후 기간에 발생한 주식 가치 변동에 대한 부분을 고가양도로 판정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의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일을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기준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재차 적용 요건 명확화

가. 관련 규정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주식이 명의신탁이 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명의신탁된 계좌에서 주식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하고 있다.

나. 관련 조세심판례

조심2016구4148(2017. 1. 9.)에서 청구인은 어머니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해왔으나, 이에 대해 최초 증여세가 과세된 후 기존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²⁰⁾

조심2016중4290(2017. 12. 1.)에서 청구인은 실소유자의 자금을 받아 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최초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이후 해당 자금으로 취

subject

20)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1938&menuNm=demList&rdView=subject

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새로 매수한 주식은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 처분을 받음으로 앞선 판례와 엇갈리는 부분이 존재한다.²¹⁾

다. 쟁점 및 개선방안

실제소유자가 명의인의 계좌에서 주식을 거래할 경우 최초의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 계좌에서 주식을 양도한 후 새롭게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까지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동일 출처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재차 과세됨으로 인해 이중과세가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명의신탁된 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증여의제가 될 뿐 아니라 양도대금을 이용해 새로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 반면, 취득자금을 받아 명의신탁된 계좌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최초에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명의신탁 계좌의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재차 상속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상속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정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이 명문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법정결정기한 준수 유도

가. 관련 규정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상속세·증여세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²²⁾

나. 관련 조세심판례

조심2017중4373(2017.12.7.)에서 납세자는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결정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중하게 부과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법정결정기한을 초과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

21)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8954&menuNm=demList&rdView=subject

22) 상속세법 제76조 제3항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였다.²³⁾

다. 쟁점 및 개선방안

상증세법에 법정결정기한이 정하여져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할 경우, 납세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조세채권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결정기한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정결정기한의 연장을 위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서장 등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법정결정기한 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야 할 것이다.

6. 가산세 면제사유 명확화

가. 관련 규정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한다.²⁴⁾

나. 관련 조세심판례

납세자와 처분청 간 재산평가방법상 차이로 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심2017서3357(2017.11.13.)에서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상 차이로 미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²⁵⁾

다. 쟁점 및 개선방안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의 의미 또는 판단기준이 세법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분쟁이

23)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9104&menuNm=demList&rdView=subject

24)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25)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8548&menuNm=demList&rdView=subject

끊이지 않고 있다.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모든 평가상 차이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기 어렵다면 집행기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7.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 1주택 요건 단순화

가. 관련 규정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²⁶⁾ 이 때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존재한다.²⁷⁾

나. 관련 조세심판례

조심2017서1428(2017.7.21.)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동거주택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규정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동거주택상속공제에 확장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²⁸⁾

다. 쟁점 및 개선방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검토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주택의 범위와 상속세법상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검토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주택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납세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상 특례주택의 범위와 상속세법상 특례주택의 범위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26) 상속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27)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28)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6769&menuNm=demList&rdView=subject

〈표 4〉 1세대 1주택 특례주택의 범위 비교

소득세법상 특례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증세법상 특례주택의 범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주거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중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함) • 혼인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피상속인이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 장기임주택과 그 밖의 1주택 보유	• 주거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중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함) • 혼인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피상속인이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위 표에서 주거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은 중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증세법은 중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공제혜택을 적용한다. 이와 유사하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은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상증세법은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본적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89조를 준용하고 있다. 소득세법과 상증세법 간 주택 수 산정기준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2017년 소득세법 개정사항이 상증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소득세법 역시 주거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중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고,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201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특례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의 범위를 최대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8. 효도계약서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가. 관련 규정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²⁹⁾ 이 때 직계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³⁰⁾

나. 관련 조세심판례

조심2017부3727(2017.11.20.)에서 청구인은 부모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20년간 매월 분할하여 양도대금을 자동 이체하는 일명 ‘효도계약서(공증 받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는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복리식 미래가치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의 대가를 20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통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그 부모 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대금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부동산매매계약서는 없지만 20년간 매월 분할하여 양도대금을 자동이체할 것을 약정한 공증 받은 증여계약서가 존재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³¹⁾ 유사한 사례로 조심2017서1163(2017.6.15.)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지분이 피상속인의 은행대출금 및 이자를 대신하여 갚은 대가와 10여년의 부양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는 도덕적·의례적·비재산적 의무일 뿐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라거나 법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부산고등법원 2012.2.1. 2011누250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10년간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하며 동거 봉양한 대가로 쟁점아파트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³²⁾

29)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

30) 상증세법 집행기준 44-33-1

31)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8665&menuNm=demList&rdView=subject

32)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4957&menuNm=demList&rdView=subject

다. 쟁점 및 개선방안

효도계약서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과세처리기준이 없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판례와 조세심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효도계약서에 따라 직계비속이 매월 직계존속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모에 대한 부양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고 공증 받은 계약서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하여 부모에게 실제로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부양료로 보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효도계약서에 따라 매월 직계존속에게 지급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양료로 보는 것인지, 직계존비속간 거래에서 매매대금과 대금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지 등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9.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가. 관련 규정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과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중 낮은 가액을 시가로 본다.³³⁾

나. 관련 조세심판례

조심2017부2277(2017.8.31.)에서 처분청은 감정가액을 공시지가 및 매매사례가액의 90%와 비교하지 않고, 공시지가 미달 여부만을 기준으로 재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소급하여 재감정한 가액이 공시지가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과 처분청의 재감정가액의 차이가 4.32%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였다.³⁴⁾

다. 쟁점 및 개선방안

현재는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세무서장이 재감정한 가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보다 높으면 차이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3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34)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7126&menuNm=demList&rdView=subject

가산세가 부과된다. 서로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된다.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10.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재산 물납

가. 관련 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³⁵⁾

나. 관련 조세심판례

조심2017중0210(2017.5.31.)에서 청구인은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평가된 물납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후 경정이 발생하자 기 납부한 물납재산의 잔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를 충당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세 물납과정에서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진 만큼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³⁶⁾

다. 쟁점 및 개선방안

동일한 상속 건의 경우 납세자의 자진신고 후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상속세액이 변동됐을 때는 물납재산의 초과평가금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11. 순인출금의 계산과 입증책임

가. 관련 규정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35)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36)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4838&menuNm=demList&rdView=subject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³⁷⁾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4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은 순인출금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text{순인출금} = \frac{\text{상속개시일 1년 또는 2년 내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text{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 - \left(\frac{\text{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text{당해 통장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 \right)$
--

*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3625)

나. 관련 조세심판례

조심2016구4395(2017.5.15.)에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2년 전 인출된 예금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대신 자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본 합계만을 차감하여 순인출금을 계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순인출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인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입금액 및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³⁸⁾

다. 쟁점 및 개선방안

전체 계좌의 인출금 합계가 전체 계좌의 입금액 합계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를 위해 과세관청은 해당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을 입증해야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또는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한 채) 무리한 과세를 시도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순인출금의 산정과정에 있어 해당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을 입증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실무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12. 유류분 반환에 대한 과세

가. 관련 규정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

37)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38)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4466&menuNm=demList&rdView=subject

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³⁹⁾ 그러나 상속인들 간 분쟁 과정에서 재판상 결정이 아닌 상호합의로 유류분 반환금액을 지급한 경우, 이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나. 관련 조세심판례

조심2017중0551(2017.10.18.)에서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판결 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수령하고, 처분청의 안내문에 따라 기한 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판결 및 상호합의를 통해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통지한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정하였다.⁴⁰⁾

다. 쟁점 및 개선방안

상속인들 간 분쟁과정에서 재판외 화해 또는 상호합의로 유류분 반환금액을 지급한 경우 과세처리가 법률이 아닌 조세심판례에 의존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판외 화해 또는 상호합의에 의한 유류분 반환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유류분 반환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유류분 반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동산 등기원인이 ‘유류분 반환’일 때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 납세자가 유류분 반환을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신고대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납세자 신고안내문에 유류분 반환은 상속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5>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조세심판례의 세부 분석을 통하여 발견한 상증세법 상 미비점과 그 개선안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39)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40) http://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40&dem_no=157954&menuNm=demList&rdView=subject

〈표 5〉 상속세법 조세심판례 분석 결과의 요약

구분	관련 법령	심판례 결정사항	쟁점	개선방안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다수의 심판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신고된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 평가를 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시 접수이 후에 신고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감면이 타당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을 판단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시가 평가기간 확장요건 명확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	납세자가 제시한 매매 등 가액이 평가기간을 초과한 경우, 그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평가기간을 확장할 수 있으나, 납세자는 시가 평가기간을 확장할 수 없음.	1. 시가 평가기간 확장으로 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음. 2. 납세자의 평가심의위원회 신의신청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관련 재산가액 평가기준일	상증세법 제35조 제1, 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계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과 잔금청산일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함.	매매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사이 기간 경과가 상당한 경우 재산가치가 급변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한정적임.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매매계약일을 양수 및 양도일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명의신탁 증여의계의 제차 적용 요건	상증세법 제45조의2	최초 명의신탁된 증원계좌에서 기존 주식을 매도하고 신규로 매수한 주식에 대해 제차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엇갈리는 결정이 이루어짐.	동일 계좌에서 기존 주식을 양도한 후 신규 매수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존재함.	명의신탁제도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정이라는 내용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음.
법정결정기한 준수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을 지나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에도 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인정함.	법정결정기한이 혼시적 규정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음.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을 준수하도록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음.
가산세 면제사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납세자와 처분청 사이의 재산평가방법 차이로 결정세액이 달라질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한 감면·면제는 인정되지 않음.	가산세 감면·면제의 사유가 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불복이 지속되고 있음.	집행기준 등을 통해 가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표 5〉 상증세법 조세심판례 분석 결과의 요약 (계속)

구분	관련 법령	심판례 결정사항	쟁점	개선방안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 1주택 요건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를 주장했으나,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	1세대 1주택 요건 검토 시 주택 수에서 차감하는 특례주택의 범위가 상속세법과 상증세법에서 차이가 있음.	2017년 개정으로 발생한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의 차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효도계약서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간 작성한 효도계약서를 통한 부동산소유권을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효도계약서에 의하여 직계존속에 계 지급하는 금액이 단순한 부양료이며, 소유권이전의 대가는 될 수 없는가?	효도계약서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리기준이 필요.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재감정한 가격과 비교하여 시가를 평가함.	서로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정확히 일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감정한 가액이 높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됨.	세무서장이 재감정한 가격과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의 차이를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재산 물납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평가된 물납재산의 초과가액으로 추가 고지된 상속세를 충당할 수 없게 결정함.	납세자는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가격의 물납재산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대한 추가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함.	자진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물납재산의 초과평가금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순인출금의 계산과 입증책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상속개시일 2년 전 인출된 예금 합계액에서 자계좌로 재입금된 금액만을 차감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결정할 것을 결정함.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에도 불구하고 순인출금의 무리한 계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과세관청의 실무관행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
유류분 반환에 대한 과세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상속인들 간 상호합의로 지급한 유류분 반환금액에 대한 과세처리에 명확한 기준이 없음.	납세자 혼란방지를 위한 안내문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함.

V. 결 론

본 연구는 2017년 기간에 처리된 상속세법 관련 조세심판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판청구 현황을 분석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판결이 이루어진 존재하는 판례를 추출함으로써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상속세법 조세심판례 497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약 3건 당 1건 이상의 판례에서 인용(재조사, 취소, 경정 처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불복판례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로는 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35%가 넘는 인용률을 보이고 있어, 재산의 평가와 관련해서 납세자와 관세관청의 충돌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법 판례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상속세법 상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심판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신고된 거래가액을 유사매매거래가액으로 시가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당시 유사매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관련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판단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서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기간 경과가 상당한 경우 재산가치가 급변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한정적이다.

셋째,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해 최초 명의신탁된 증권계좌에서 기존 주식을 매도하고 신규로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 재차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 엇갈리는 결정이 나타났다. 이 경우 동일 계좌에 대해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넷째, 몇몇 심판례에서는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을 지나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에도 이로 인한 납세자의 신고금액과의 차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시가 평가기간 확장요건 명확화, 가산세 면제사유 명확화,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 1주택 요건의 단순화, 효도계약서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재산 물납, 순인출금의 계산과 입증책임, 유류분 반환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다양한 상속세법의 개선안을 제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상속세법 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 정책과 관련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선행연구는 조

세불복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징수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자체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으며, 납세자가 조세불복을 신청하기에 앞서 필요한 예방적인 대책을 제시한다는 공헌점이 있다.

참고문헌

- 감사원. 2012-2016. 「감사연보」.
- 국세청. 2012-2017. 「국세통계연보」.
- 길용원. 2014.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2호 : 3-34.
- 김완용·허 원·박 훈. 2017.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중복조사 제한 및 허용의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 147-171.
- 김영조·이재교·김재광. 2005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연구」. 국세청 연구용역보고서.
- 김홍기·홍정화. 2011. “효율적인 납세자권리구제 방안 연구 - 조세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8권 제4호 : 177-212.
- 박상봉. 2016.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경영과정보연구 제35권 제2호 : 67-81.
- 박종수. 2012. “현행 조세법상 납세자이익보호 및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 69-105.
- 배형남·김갑순. 2015.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 205-237.
- 배형남·김갑순·윤성만. 2014. “조세심판청구의 금액, 쟁점사항 및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이 심판결정의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 - 조세심판원의 비상장주식 관련 심판결정례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5호 : 345-372.
- 안숙찬. 2003.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9권 : 65-87.
- 안숙찬. 2017. “조세불복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5호 : 111-140.
- 이광수·정규언. 2007. “국세불복절차의 선택 요인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4호 : 69-99.
- 이수진·김보례. 2014.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 이영환. 2016. “조세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과제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 263-288.
- 이전오. 2007.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전형준·이광수. 2014. “현행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6집 : 150-173.
- 정지선·최천규. 2012.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앙법학 제14권 제2호 : 199-243.
- 조세심판원. 2016-2017. 「조세심판통계연보」.
- 조재천. 2007.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세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재천 · 홍정화 · 김완희 · 김선구. 2008. “이용 만족도 분석을 통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 9-42.
- 최영관 · 홍정화. 2015.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4호 : 315-342.
- 한상국 · 박 훈. 2005.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홍기용. 2011. “납세자보호법과 납세자보호원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1호 : 325-34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rough analyses on Precedents of the Tax Tribunal*

Eun Sun Ki** · Jun Yong Shim***
· Ki Young Kim**** · Jae Won Yo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ecedents of Tax Tribunal related to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during the period of 2017 in order to extract the cases which are irrational in the taxpayers' viewpoint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Yearbook of Tax Tribunal, 280 out of 827 taxpayers' disagreement was accepted in 2017 (review, cancellation, rectification and decision). This implies that excessive taxation and collection by taxation authorities may be taking place.

This study examines the details of 497 precedents of Tax Tribunal in 2017 in order to identify the imperfection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hich is the basis of taxation and collection by taxation authorities, and to suggest remedies. As a result, we found the following points.

1. Whether accepting the value of similar sales cases reported after receipt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turn as the market value
2. Clar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the expansion of market valuation period
3. Expansion of the valuation date of the property value related to purchase in low price and transfer in high price
4. Clarification of re-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5. Compliance with legal term of the decis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7 Hongik University Research Fund and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ski@kangwon.ac.kr,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yongji University, junyong00@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yongji University, kykim@mju.ac.kr, Co-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jwyoona@hongik.ac.kr, Co-author

6. Clarification of the reason for tax exemption
7. Simplific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one household in the same household
8. Transfer of real estate by contract
9. Acceptance of undervalued appraisal as the market value
10. Tax payment in kind for the amount exceeding inheritance tax amount
11. Calculation and responsibility of proof for net withdrawals
12. Taxation on the return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We expect this study, which found the issues above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as the following contributions. First, this study contributes by presenting the concrete amendment pla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fying problems. Second, prior studies focused on the tax appeal system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tax appeal system. This study, however, contributes prior literature by analysing the imperfection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tself, which is the basis of taxation and collection and by proposing how to improve those imperfections.

<Key word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ax Tribunal, Tax Appeal, Taxpayer